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
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56
----------	-----

2024. 4. 2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4. 12. 강남구청장(자원순환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4. 25.)
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복지생활국장 오선미)

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주민을 확대하여 거주단지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참여 주민 확대(3명→8명)(안 제3조)

나. 기타 오타 및 그 외 맞춤법 오류사항 정비(안 제7조)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가족정책과, 감사담당관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(2024. 2. 2. ~ 2024. 2. 22.) 결과 의견 없음.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.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.(분석평가 완료)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문성)

1 개정안 취지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)

- 관내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설치·운영되고 있는 바(참고자료 참조), 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」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설치시설로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‘주민지원협의체’를 구성하여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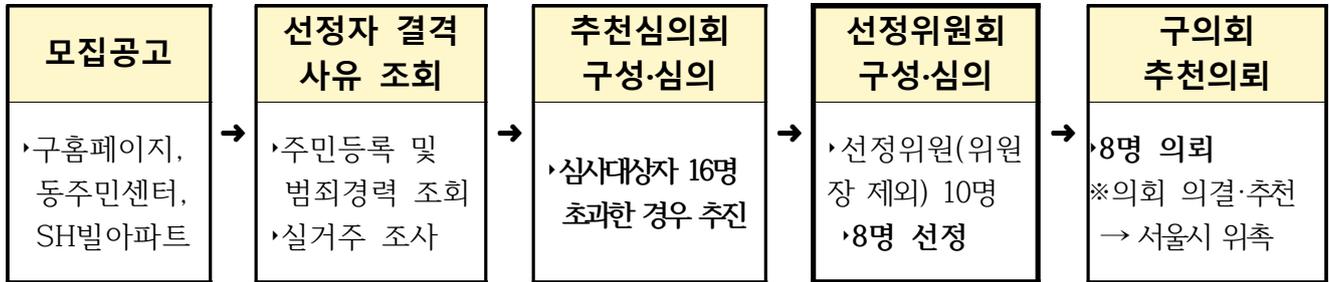
※ 같은 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는 아래 기능을 수행함.(법 제17조의2제2항)

- ① 법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
-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
- ③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
- ④ 법 제25조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
-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「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(이하 ‘선정위원회’)」의 심의과정을 통해 주민대표를 강남구의회에 추천의뢰하는 바, 이에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에 최종 추천하여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서 구성함.

※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 8명, 강남구의회의원 5명, 민간전문가 2명인 총 15명으로 구성됨.

<표>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선정절차(현행 조례 기준)



- 현행 조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(8명)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강남구의회 의원 3명, 변호사 1명, 민간전문가 2명, 해당지역주민 등 3명으로 위원장(복지생활국장)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됨.
- 집행부는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여주민을 확대하여 거주단지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주민대표 3명을 8명으로 확대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음.

※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가 8명으로 확대될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의 수는 15명이 되는 바, 이 또한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반영함.

2 결론

- 금번 개정안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주단지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선정위원 중 주민대표를 증원(3명→8명)하는 내용인 바,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
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4. 12.
제출자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: 자원순환과

1. 제안이유

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주민을 확대하여 거주단지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참여 주민 확대(3명→8명)(안 제3조)
- 나. 기타 오타 및 그 외 맞춤법 오류사항 정비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가족정책과, 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24. 2. 2. ~ 2024. 2. 22.) 결과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
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1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3명”을 “8명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선전된”을 “선정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1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,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해당지역 주민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: <u>3명</u>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 <p>제7조(대상자의 심의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<u>선정된</u> 대상자를 3일 이내에 강남구의회에 추천 의뢰한다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 <u>8명</u> 이내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대상자의 심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선정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인한 규칙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에 의거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자원순환과 행정9급 김경욱(02-3423-5977)